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14조)
다.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라.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4조)
마.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3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감사실-2445(2019.8.23.)]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33842(2019.8.21.)]
마. 입법예고 : 2019. 9. 12.～2019. 10. 4.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체류형 농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4. “소득법인”이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운영 하는 해당 지역의 10가구 이상 주민 참여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5.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운영·관리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제6조(위탁절차)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협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을 한 경우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 라 한다)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위탁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

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거짓 진술, 거짓 증명)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소득시설물 운영·관리) ① 군수는 소득법인 등과 협약하여 소득시설물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 받은 보조금의 2퍼센트 이상 5퍼센트 이하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비율은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에 드는 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4조(재산이관) 시설물 준공 시 시설물의 능률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 소재지의 읍장·면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실과소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5조(이용료의 납부)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지역사회의 통상적인 기준),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수탁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항은 소비자분쟁 기준에 따른다.

제1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7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협의회

제18조(성주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의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농정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 소재지 읍장·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농촌개발담당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계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table>
<tr><td colspan="6">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수탁 신청서</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명(단체명)</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대 표 자</td><td></td><td>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위탁시설</td><td>시 설 명</td><td></td><td>면적(㎡)</td><td colspan="2"></td></tr>
<tr><td>시 설 명</td><td></td><td>면적(㎡)</td><td colspan="2"></td></tr>
<tr><td>시 설 명</td><td></td><td>면적(㎡)</td><td colspan="2"></td></tr>
<tr><td>시 설 명</td><td></td><td>면적(㎡)</td><td colspan="2"></td></tr>
<tr><td>위탁기간</td><td colspan="5">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td></tr>
<tr><td>위탁목적</td><td colspan="5"></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5">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
5.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td></tr>
<tr><td colspan="6">「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성주군수 귀하</td></tr>
</table>